#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

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치한 대학원 교육과 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03.21.>

#### 제 2 조 (기능)

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
- 2.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및 심의
- 3.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혁신 방안 수립 및 심의
- 4.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사항 연구 및 심의

#### 제 3 조 (구성)

- ①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. <개정 2012.03.21>
-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한다. <개정 2012.03.21.>

### 제 4 조 (임기)

-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에 의한 위촉위원의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## 제 5 조 (간사)

- ①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학사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7.04.11, 2018.08.28>
-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회무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

### 제 6 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## 제 7 조 (운영세칙)
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 8 조 (전공교육과정위원회) [조문 신설 2021.11.24.]

① 전공교육과정위원회는 전공별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·심의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장한다.

- 1. 전공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·편성에 관한 사항
- 2. 전공교과목의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
- 3. 전공교육과정의 수요조사
- 4. 전공특강의 개설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전공교과목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
-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- 1.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겸임하고 소속 교원 모두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 총원이 외부위원(교내 혹은 교외)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
- 2. 위원장의 임기는 전공주임교수 재임기간으로 하고 해당학과 소속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 간으로 하며 그 외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### 제 9 조 (교육과정조정위원회) [조문 신설 2021.11.24.]

- ① 교육과정조정위원회는 전공교육과정위원회에서 상정한 내용을 심의·조정해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장하는 업무를 관장한다. 본 위원회는 「교육과정위원회규정」제12조 교육과정조정위원회와 통합·운영한다.
- ② 위원회 구성은 「교육과정위원회규정」제12조 제2항 1,2호를 준용한다.

부 칙(승인일자: 2010.6.16)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개정 2018.08.28)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